구청장 공약사업 관리카드

유 형	자체사업		구 분	단기
관리번호	2-3		담 당 (전화번호)	정미경 (☎749-4572)
사 업 명	교통체증 유발시설(초고층건물 등)에 대한 제도적 기준 강화			
주관부서	교통행정과	관련부서		
총사업비	비예산 사업			

추진실태	이행완료		정상추진	기타	비고
	완료	계속추진			
			○		

1 사업개요

○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현실화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강화

○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(시설물) 지정 시 부산시에 부담금 부과기준 마련 요청

2 연도별 추진 로드맵

단위 사업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비고
부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조례 개정	———					
대형시설물 면적당 단위부담금 체계 마련		———				
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부담금 부과기준 정비		———				

3 재원조달 : 비예산 사업

4 이행실적(주요성과)

❍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 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적 부과기준 마련

- 부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조례 정비 요청
- 부과기준 요청 내역(교통행정과-30045(2019.4.8.)

연번	구분	주요내용	사유
1	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 (부담금의 산정기준) 제2항에 따른 기준표 작성	- 관련법 조항의 내용(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다)에 대한 시 조례상 기준표 작성	교통혼잡 유발 대형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추진 및 제도적 기준 마련
2	면적당 단위부담금 단계적 인상	- 대상 : 교통체증 유발 연면적 3,000㎡ 초과 시설물	
3	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마련	- 대상 :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 시 지역내 연면적 3,000㎡ 초과 시설물	

5 향후계획

○ 대형시설물의 단위면적당 부담금 변동에 대한 사업취지 안내 : 시설방문, 안내문 발송 등

○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홍보 및 계도 : 관리사무소, 아파트 등